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인촌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('24.10.22.시행)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(안 제20조), 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(안 제24조),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(안 제25조) 삭제
- 나. 규제의 재검토 규정 중 골프장 부가금 수납방법 등 삭제(안 제44조의2 제5호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5. 03. 05. ~ 04. 14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,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4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20조(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)</u> ① <u>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“입장료”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<u>제24조(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)</u> ① <u>계정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 <u>1. 목적</u> <u>2. 부가금 징수 대상</u> <u>3. 방법</u> <u>4. 기간</u> <u>5. 부가금 징수 예정액</u> <u>6. 사업계획과 수지예산</u>	<u><삭 제></u>

7. 징수비용 명세서와 지급방법

8. 그 밖의 참고사항

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
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변경
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
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
충당할 수 없다. 다만, 문화체육
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
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
부가금 징수액의 100분의 5를
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
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
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
의 승인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이
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징수하였
을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
나 징수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
있다.

제25조(부가금의 수납방법 등) ①

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골프장
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
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낼 때에는
현금으로 수납하여 내야 한다.
다만, 계정관리기관의 장은 정

<삭 제>

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
·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
할 수 있다.

②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
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
다음 달 10일까지 계정관리기관
에 내야 한다.

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“부가금
수납과 관련된 서류”란 골프장
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
명세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
말한다.

④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제3
항에 따른 서류 중 부가금수납
명세서(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
포함한다)는 매월 말일까지의
수납 명세를 기록하여 다음 달
10일까지 계정관리기관에 제출
하고,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계
정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
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에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
한다.

제4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

제4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

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1. ~ 4의2. (생 략) <u>5.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 납방법 등: 2017년 1월 1일</u> 6. ~ 8.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6. ~ 8.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124